

#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1156
----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16. 4. 25  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- 2016년 4월 7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091번 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과 같은 해 4월 19일 김미경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136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,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,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할 것을 의결함

## 2. 대안의 제안이유

- 「건축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·구 건축위원회 인원을 확대하고, 소규모굴착공사시 안전사고발생을 방지하고자 굴토심의기준을 강화하며, 공개공지 서식을 변경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.

## 3. 대안의 주요내용

- 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“25명 이상 100 이내”에서 “25명 이상 150명 이내”로 확대하고, 자치구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“25명 이상 36명 이내”에서 “25명 이상 60명 이내”로 확대함.(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)

- 안 제7조제1항제1호사목의 시 위원회의 굴토심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‘지하 2층 미만 굴착공사’에 대해서도 굴토심을 받게 함.(안 제7조제1항제1호사목)

안 제7조제1항제2호라목의 구 위원회의 굴토심의 대상으로 시 위원회의 굴토심의 대상 규정을 적용하되 시 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제외함.(안 제7조제1항제2호라목)

- 공개공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상 건축물의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내용 및 세부시설 현황 등을 상세히 기록·관리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 관리대장 서식을 변경함(안 별지 제 4호 서식)

-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자구정비 사항

##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외 부분 본문 중 “건축법 시행령”을 “「건축법 시행령」”으로 하고, “지역중에서를 ”지역 중에서“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4호 중 “옛길 보존을 목적”을 “옛길, 옛물길 등 역사·문화자원의 보존을 목적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건축법”을 “「건축법」”으로 하고, “(이하 “대지등”이라 한다)”를 “(이하 “대지 등”이라 한다)”로 하며, “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허가권자(해당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는 시장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.이하 같다)”를 “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(해당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는 시장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한다.

제3조제3항 단서 외 본문 중 “요청일부터”를 “요청일로부터”로 하고, “요청인”을 “신청인”으로 하며,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,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서류 보완접수일 또는 재검토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

제3조제4항제1호 중 “대지등”을 각각 “대지 등”으로 하고, “(이하 “법령등”이라 한다) 관계규정을”을 “(이하 “법령 등”이라 한다)의 적용이”로 하며, “함.”을 “함”으로 한다.

제3조제4항제2호 중 “대지등”을 “대지 등”으로 하고, “법령등”을 “법령 등”으로 한다.

제3조제5항 중 “규칙 제2조의4제1호”를 “규칙 제2조의5제1호”로 한다.

제3조제7항 단서 외 본문 중 “용적율”을 “용적률”이라 하고, 같은 항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.

제3조제8항 및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제7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보육시설,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
2. 도서관,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

제4조 각 호외의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중 “법령등”을 각각 “법령 등”으로 하고, 제4조 각 호외의 본문 중 “법령등의 규정”을 “법령 등”으로 하며, “건축(재축·증축·개축에 한한다), 대수선 및 용도변경”을 “건축(재축·증축·개축에 한한다) 또는 용도변경”으로 한다.

제4조제7호 “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”를 “개축하는 경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중 “25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”를 “25명 이상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25명 이상 3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”를 “25명 이상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”로 한다.

제5조의2제1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제5조에 따른 시 위원회와 구 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5조의3 제목 중 “해촉”을 “위촉 해제”로 하고, 제목 외 본문 중 “해촉(解囑)”을 “위촉 해제”로 한다.

제6조의3제1항 중 “건축민원전문 위원회”를 “건축민원전문위원회”라고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5급이상”을 “5급 이상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“재직중”을 각각 “재직 중”으로 한다.

제6조의4제2항 중 “5일전까지”를 “5일 전까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재적위원”을 “재적 위원”으로 하고, “출석위원”을 “출석 위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4분의1”을 “4분의 1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가목 중 “「서울특별시 건축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건축조례」”로 하고 같은 호 다목 3)에서 “1), 2)에 해당하는 경우”를 “1), 2)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사. 다목에 의한 건축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

- 1) 길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, 높이 5미터 이상

옹벽을 설치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

2) 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·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·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미터 이상인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

3) 그 밖에 토질상태, 지하수위, 굴착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토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

제7조제1항제1호아목 중 “부의하는 사항”을 “회의에 부치는 사항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라. 제1항제1호다목이 아닌 건축물 중 제1항제1호사목 1)부터 3)에 관한 사항

제7조제1항제2호마목 중 “부의하는 사항”을 “회의에 부치는 사항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“(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)”를 “(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“10분의1”을 “10분의 1”로, 제4호 “코아”를 “코어”로 한다.

제15조 중 “같다.다만”을 “같다. 다만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6항, 제18조, 제19조제2항, 제20조, 제21조 및 제26조 제1항제2호, 제45조제3항 중 “한다.다만”을 각각 “한다. 다만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6항 중 “한다.이”를 “한다. 이”로 한다.

제17조제3항 중 “영 제15조제5항제15호”을 “영 제15조제5항제16호”

로 한다.

제19조제1항제1호 중 “한한다)전”을 “한한다) 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“건축물중”을 “건축물 중”으로 한다.

제20조 “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”를 “고시하는 「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」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”로 하고, “10분의5”를 “10분의 5”로 한다.

제26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, 같은 항 제2호, 같은 항 제3호,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본문, 같은 항 제6호 및 제8호, 같은 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, 같은 조 제5항 중 “공개공지등”을 각각 “공개공지 등”으로 한다.

제26조제1항제1호 중 “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”를 “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”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“다.업무 시설”을 “다. 업무시설”로 한다.

제26조제1항제2호 단서 중 “피로티구조”를 “필로티구조”로 하고, “2분의1만”을 “2분의 1에 한하여”로 한다.

제26조제2항제4호,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“피로티 구조”를 각각 “필로티구조”로 한다.

제26조제3항제3호 중 “2분의 1만”을 “2분의 1에 한하여”로 한다.

제44조제1항제2호 중 “싸이로”를 “사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“하중이”를 “무게가”로 한다.

제30조 관련 별표 4의 1호 중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문화 및 집회시설 (전시장 및 동·식물원 제외), 종교시설 장례식장	• 1,000제곱미터 이상	• 3미터 이상
	• 1,000제곱미터 미만	• 1미터 이상



별지 제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지 제2호서식] (개정 2016. . .)

<input type="checkbox"/> 건축계획(변경)심의신청서 <input type="checkbox"/>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심의신청서					
연번 :					
건축위치					
건축주	주소				
	성명		생년월일		
용도지역 및 지구	지역		지구		
계획내용	대지면적		건축면적		연면적
	층수	지하 층, 지상 층	건폐율 %		건물 용도
	구조		용적률 %		
	건축종별		설계변경인경우 변경내용		
	최고높이		기타		
기준완화 심의대상	관계법령				
	신청사유				
설계자	주소			건축사면허번호	
	사무소명		성명	전화	
관계전문 기술자	(분야, 사무소명, 전화번호)				
교통 기술사	주소			기술사등록번호	
	사무소명		성명	전화	
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					
년 월 일 신청인(건축주) 주소 : 성명 :					
<b>서울특별시시장·구청장 귀하</b>					
첨부서류 : 1. 현장조사보고서 1부. 2. 건축계획서(인원수 및 PPT 등에 따라 부수조정) 3. CD 1부					

210mm × 297mm(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)

별지 제4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관리번호		-	
------	--	---	--

##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(제26조 관련)

### 1. 공개공지 등 현황

(4쪽 중 제1쪽)

위 치		( 구 동 번지)				
건 물 명				사용승인일		
건 축 물 기 본 정 보	대 지 면 적	m <sup>2</sup>	연 면 적	m <sup>2</sup>		
	건 폐 율	%	용 적 륜	%		
	층 수	지상	층	주 용 도		
		지하	층			
	건 축 물 기 준 내 용	용적률 완화				
		높이 완화				
		기 타				
	건 축 주			연 락 처		
설 계 자			연 락 처			
시 공 자			연 락 처			
공 개 공 지 기 본 정 보	면 적	m <sup>2</sup>	유 형 <sup>1)</sup>			
	조 성 설 시 설	휴게시설	벤 치	<input type="checkbox"/> 설치( 개)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설치	테 이 블	<input type="checkbox"/> 설치( 개)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설치
		기 타	파 고 라	<input type="checkbox"/> 설치( 개)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설치	운 동 기 구	<input type="checkbox"/> 설치( 개)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설치
		기 타	조 명	<input type="checkbox"/> 설치( 개)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설치	기 타 시 설 <sup>2)</sup>	<input type="checkbox"/> 설치( ( 개))
	안 내 표 지 판	설 치 방 법	<input type="checkbox"/> 부착형(건물벽, 바닥, 시설물에 부착) <input type="checkbox"/> 스탠드형(독립된 표지판)			
	감 리 자 <sup>3)</sup>	(인)(사무소명 : )				
<b>공 개 공 지 배 치 도<sup>4)</sup></b>						

공개공지 사진<sup>5)</sup>

5) 공개공지 사진은 전체 조성현황 및 이용실태가 보일 수 있는 거리에서 최소 2개 지점 이상 촬영하도록 하고, 위반내용 등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을 Close-up하여 촬영하도록 한다.

(4쪽 중 제3쪽)

공개공지 시설사진 <sup>6)</sup>	
안내표지판(필수)	벤 치
테 이 블	파 고 라
수경시설	조 명
운동기구	기타시설

6) 공개공지 시설사진 중 안내표지판은 의무사항이며, 이외 조성시설물 사진은 조성내역에 따라 촬영하도록 한다.

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적용의 완화) ① <u>건축법 시행령</u> (이하 "령"이라 한다)제6조제1항제4호에서 "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"이란 다음 각 호의 <u>지역중에서</u> 서울특별시상 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지정·공고한 구역을 말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<u>옛길 보존을 목적으로 수북형(소단위 맞춤형) 도시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</u></p> <p>② <u>건축법</u>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(이하 "대지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법·영·건축법 시행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<u>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허가권자(해당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는 시장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.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</p>	<p>제3조(적용의 완화) ① 「<u>건축법 시행령</u>」 ----- ----- -----<u>지역 중에서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----- ----- -----<u>옛길, 옛물길 등 역사·문화자원의 보존을 목적</u>----- ----- -----</p> <p>② 「<u>건축법</u>」 ----- ----- -----<u>(이하 "대지 등"이라 한다)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(해당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는 시장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-----.</p> <p>③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<u>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</u>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u>다만,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,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</u>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-----,-----  <u>요청일로부터</u> -----<u>신청인</u>-----  ----- . <u>다만,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,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</u> 서류 보완접수일 또는 재검토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</p>
<p>④ (생략)</p>	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1. 해당 <u>대지등</u>에 법·영·규칙 또는 이 조례(이하 "법령등"이라 한다) <u>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.</u></p>	<p>1. --- <u>대지 등</u>-----  -----<u>(이하 "법령 등"이라 한다)</u>  <u>의 적용이</u> -----  <u>대지 등</u>-----  ----- <u>함.</u></p>
<p>2. <u>관계법령·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</u>이어야 함</p>	<p>2. -----<u>대지 등</u>-----  -----<u>법령 등</u>-----  -----</p>
<p>⑤ <u>규칙 제2조의4제1호에 따른 증축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,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에 불법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</u></p>	<p>⑤ <u>규칙 제2조의5제1호</u>-----  -----  -----  ----- .</p>



현 행	개 정 안
<p>⑥ (생략)</p> <p>⑦ 영 제6조제2항제5호 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<u>용적률</u>로 한다. <u>다만, 보육시설,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관,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 설〉</p>	<p>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용적률</u>로 한다. <u>다만,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.</u></p> <p>⑧ 제7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1. <u>보육시설,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</u></p> <p>2. <u>도서관,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</u></p>
<p>제4조(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) 허가권자는 법 제6조,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<u>법령등의 제정·개정이나 영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</u></p>	<p>제4조(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) ----- ----- -----<u>법령 등</u>----- ----- -----<u>법령 등</u>----- -----</p>



현 행	개 정 안
<p>2. 시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 5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</p> <p>3. ~ 6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<u>25명 이상 3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 다만, 영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.</p> <p>2. 구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 5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</p> <p>2. ~ 6. (생략)</p> <p>제5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① <u>위원회</u>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</p>	<p>2. ----- ----- -----</p> <p>3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----- <u>25명 이상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2. ----- ----- -----</p> <p>2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① <u>제5조에 따른 시 위원회와 구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</u>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5조의3(위원의 해임·해촉) 서울특별시 시장 또는 구청장은 해당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<u>해촉(解屬)</u>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의3(위원의 해임·<u>위촉</u> 해제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위촉 해제</u> -----</p>
<p>제6조의3(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)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<u>건축민원전문 위원회</u>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<u>5급이상</u> 공무원으로 <u>재직중인</u> 자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판사,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<u>재직중인</u> 자</p> <p>4. ~ 6. (생략)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제6조의3(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) ① -----<u>건축민원전문위원회</u>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<u>5급 이상</u>-----<u>재직 중</u>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<u>재직 중</u>-----</p> 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의4(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 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<u>5일전까지</u>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6조의4(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u>5일 전까지</u>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③ 회의는 <u>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</u>으로 개의하고 <u>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</u>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<u>4분의 1</u> 이하로 한다.</p> <p>제7조(기능 및 절차) ① (생략)</p> <p>1. 시 위원회 심의사항</p> <p>가. 「서울특별시 건축조례」의 제정·개정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(생략)</p> <p>다. (생략)</p> <p>1) · 2) (생략)</p> <p>3) <u>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1), 2)에 해당하는 경우</u></p> <p>라. ~ 바. (생략)</p> <p>사. <u>다목에 의한 건축물 중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,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설치 굴착공사로 토질상태, 지하수위,</u></p>	<p>③-----<u>재적 위원</u>----- -----<u>출석 위원</u>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----- ----- <u>4</u> <u>분의 1</u>-----.</p> <p>제7조(기능 및 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</p> <p>가. 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」 -----</p> <p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1) · 2) (현행과 같음)</p> <p>3) <u>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1), 2)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u></p> <p>라. ~ 바. (현행과 같음)</p> <p>사. <u>다목에 의한 건축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</u></p> <p>1) <u>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, 높이 5미터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굴착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토심이가 필요하다</u>고 판단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</p> <p>아.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<u>부의하는 사항</u></p> <p>2. 구 위원회 심의사항 가. ~ 다. (생략)</p> <p>라. <u>제1항제1호 다목이 아닌 건축물 중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,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설치 굴착공사로 토질상태, 지하수위, 굴착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토심이가 필요하다</u>고 판단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</p>	<p><u>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) <u>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·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·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미터 이상인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) <u>그 밖에 토질상태, 지하수위, 굴착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토 심이가 필요하다</u>고 판단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</p> <p>아. ----- ----- ----- <u>회의에 부치는 사항</u></p> <p>2. -----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<u>제1항제1호다목이 아닌 건축물 중 제1항제1호사목 1)부터 3)에 관한 사항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마.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<u>부처하는 사항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(<u>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</u>)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공개공지·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 <u>10분의1</u> 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 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</p> <p>4. 건축물의 <u>코어</u> 위치를 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</p> <p>제15조(건축허가 등의 수수료)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. 다만,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</p>	<p>마.----- ----- ----- <u>회의에 부치는 사항</u></p> <p>② ----- ----- (<u>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</u>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<u>10분의 1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4. ----- <u>코어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제15조(건축허가 등의 수수료) ----- ----- ----- <u>같다. 다만,</u> 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6조(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등) ① ~ ⑤ (생략)</p> <p>⑥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토록 <u>한다.다만</u>,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(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이하인 경우 제외)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<u>한다.이</u>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</p> <p>⑦ (생략)</p>	<p>제16조(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<u>한다. 다만,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한다. 이</u> ----- ----- .</p> <p>⑦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7조(가설건축물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<u>영 제15조제5항제15호</u>에서 “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”이란 다음 표에서 정하는 건축물로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17조(가설건축물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영 제15조제5항제16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 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8조(건축물의 사용승인)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로 <u>한다.다만</u>,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</p>	<p>제18조(건축물의 사용승인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한다. 다만,</u> ----- ----- -----</p>



현 행	개 정 안
<p>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</p> <p>제19조(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) ① (생략)</p> <p>1.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(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한다)전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</p> <p>2. ~ 3. (생략)</p> <p>② 허가권자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대상 건축물 중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 업무를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<u>한다.다만</u>,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<u>건축물</u>중 제18조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하여 현장조사·검사 등의 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 <p>제20조(업무대행 수수료)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·검사 및</p>	<p>-----</p> <p>----- .</p> <p>제19조(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</p> <p>-----<u>한한다) 전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한다. 다만,</u> -----</p> <p>-----<u>건축물 중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.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0조(업무대행 수수료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31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<u>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</u>가 조사·공표한 해당 연도의 기술사의 노임단가를 준용(제19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는 경우는 상기 대행수료의 <u>10분의5</u>를 준용)한다.<u>다만,</u> 제19조제2항에 따른 현장 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는 「건축사법」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고시하는 「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」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----- ----- (----- ----- -----10분의 5-----)한 다. 다만, ----- ----- -----</p>
<p>제21조(건축지도원의 자격 등) 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지정한다.<u>다만,</u>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 건축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.</p>	<p>제21조(건축지도원의 자격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한 다. 다만, ----- ----- ----- .</p>
<p>제26조(공개공지 등의 확보)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(이하 “<u>공개공지등</u>”이라 한다)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 각</p>	<p>제26조(공개공지 등의 확보) ① ----- ----- ----- “<u>공개 공지 등</u>”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호와 같다.</p> <p>1. 대상건축물 :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</u>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</p> <p>가. ~ 나. (생략)</p> <p><u>다. 업무시설</u></p> <p>라. ~ 차. (생략)</p> <p>2. 면적 :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<u>공개공지등의 면적</u>은 대지면적 (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)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<u>공개공지등의 면적</u>에 포함하지 아니 하며, <u>필로티구조</u>로 구획되거나 제2항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은 <u>2분의1</u>만 <u>공개공지등의 면적</u>으로 산입한다.</p> <p>가. ~ 다. (생략)</p> <p>3. 대지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지하철의 출입구나 환기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<u>공개공지등의 면적</u>으로 산입한다.</p>	<p>-----.</p> <p>1. -----:----- -----<u>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</u>-----</p> <p>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다. 업무시설</u></p> <p>라. ~ 차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<u>공개공지 등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한다. 다만,</u>----- ----- -----<u>공개공지 등</u>----- -----<u>필로티구조</u>----- ----- -----<u>2분의 1에 한하여</u> <u>공개공지등의</u> -----.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-----<u>공개공지 등</u>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<u>공개공지</u>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피로티 구조</u>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</p> <p>5. (생략)</p> <p>6. <u>공개공지</u>들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(안내도 포함)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7. (생략)</p> <p>8. <u>공개공지</u>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고, 구청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·관리하여야 한다.</p>	<p>② -----<u>공개공지 등</u>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필로티구조</u>----- -----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공개공지 등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공개공지 등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용적률의 완화 :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 <math display="block">[1 + (\text{공개공지 등 면적} / \text{대지면적})] \times \text{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55조에 따른 용적률}</math> </p> <p>2.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: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 <math display="block">[1 + (\text{공개공지 등 면적} / \text{대지면적})]</math> </p>	<p>③ ----- ----- .</p> <p>1. ----- ----- [-----<u>공개공지 등</u>-----] -----</p> <p>2. -----: ----- ----- [-----<u>공개공지 등</u>-----]</p>

현행	개정안
<p>×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</p> <p>3.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<u>공개공지등</u>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, <u>피로티 구조</u>로 구획되거나 제2항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<u>공개공지등</u>의 면적은 <u>2분의 1만</u> 산입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<u>공개공지등</u>에서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. 다만,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<u>공개공지 등</u>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, <u>공개공지등</u>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범위 및 관련 절차, 이용시간 및 행위 제한 등 실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제44조(공작물 등에의 준용)</p> <p>①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저장시설 : 시멘트저장용 <u>싸이로</u>·<u>건조시설</u> 또는 유류저장시설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</p>	<p>-----</p> <p>3. -----</p> <p>----- <u>공개공지 등</u> -----</p> <p>-----, <u>피로티구조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공개공지 등</u>-----</p> <p>-----<u>2분의 1에 한하여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<u>공개공지 등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, -----</p> <p>-----<u>공개공지 등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44조(공작물 등에의 준용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사일로</u>-----</p> <p>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3. (생략)</p> <p>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작물은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<u>하중이</u> 30톤 이상의 물탱크 또는 냉각탑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.</p> <p>제45조(이행강제금의 부과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로 <u>한다. 다만</u>,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부과횟수를 총 3회로 한다.</p>	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무게가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제45조(이행강제금의 부과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한</u> <u>다. 다만</u>,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## 현 행

[별표4] 대지안의 공지기준(제30조관련)  
 1.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

다. 문화 및 집회시설 (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), 종교시설 장례식장	• 1,000제곱미터 이상	• 3미터 이상
	• 1,000제곱미터 <u>이상</u>	• 1미터 이상

[서식2] 건축계획(변경) 심의신청서,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 심의신청서

[별지 제2호서식] (개정 2010.7.15)

<input type="checkbox"/> 건축계획(변경)심의신청서 <input type="checkbox"/>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 심의신청서			
연번 :			
건축위치			
건축주	주소	생년월일	
성명			
용도지역 및 지구	지역	지구	
계획내용	대지면적	건축면적	연면적
	층수	지하 층, 지상 층	건폐율 % 건물용도
	구조	용적률 %	용도
	건축종별	설계변경인경우 변경내용	
	최고높이	기타	
기준완화 심의대상	관계법령 신청사유		
설계자	주소	건축사면허번호	
	사무소명	성명	전화
관계전문 기술자	(분야, 사무소명, 전화번호)		
교통 기술사	주소	기술사등록번호	
	사무소명	성명	전화
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			
년 월 일			
신청인(건축주) 주소 : 성명 :			
<b>서울특별시장·구청장 귀하</b>			
첨부서류 : 1. 현장조사보고서 1부. 2. 건축계획서 20부(인원수에 따라 부수조정) 3. CD 1부			

210mm × 297mm(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)

## 개 정 안

[별표4] 대지안의 공지기준(제30조관련)  
 2.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

다. 문화 및 집회시설 (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), 종교시설 장례식장	• 1,000제곱미터 이상	• 3미터 이상
	• 1,000제곱미터 <u>미만</u>	• 1미터 이상

[서식2] 건축계획(변경) 심의신청서,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 심의신청서

[별지 제2호서식] (개정 2016. . .)

<input type="checkbox"/> 건축계획(변경)심의신청서 <input type="checkbox"/>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 심의신청서			
연번 :			
건축위치			
건축주	주소	생년월일	
성명			
용도지역 및 지구	지역	지구	
계획내용	대지면적	건축면적	연면적
	층수	지하 층, 지상 층	건폐율 % 건물용도
	구조	용적률 %	용도
	건축종별	설계변경인경우 변경내용	
	최고높이	기타	
기준완화 심의대상	관계법령 신청사유		
설계자	주소	건축사면허번호	
	사무소명	성명	전화
관계전문 기술자	(분야, 사무소명, 전화번호)		
교통 기술사	주소	기술사등록번호	
	사무소명	성명	전화
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			
년 월 일			
신청인(건축주) 주소 : 성명 :			
<b>서울특별시장·구청장 귀하</b>			
첨부서류 : 1. 현장조사보고서 1부. 2. 건축계획서(인원수 및 PPT 등에 따라 부수조정) 3. CD 1부			

210mm × 297mm(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)

## 현 행

[서식2]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(제22조 관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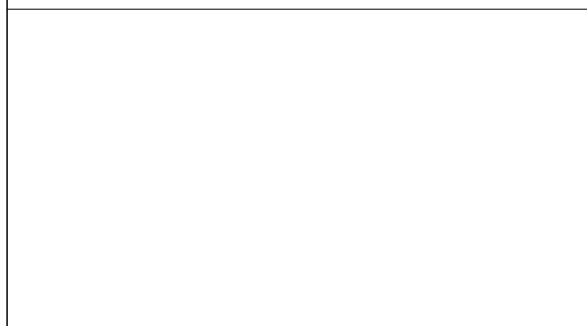
###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 (제22조 관련)

위 치		건 물 명	
대지면적		층 수	지하 층, 지상 층
연면적 합 계	m <sup>2</sup>	용 도	
공개공지 면 적		건축기준 완화내용	
공개공지 내 휴게시설			
공개공지 배 치 도			
감리사무소명		감 리 자	(인)

전 경 사 진



안 내 관 사 진



## 개 정 안

[서식2]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(제22조 관련)

관리번호 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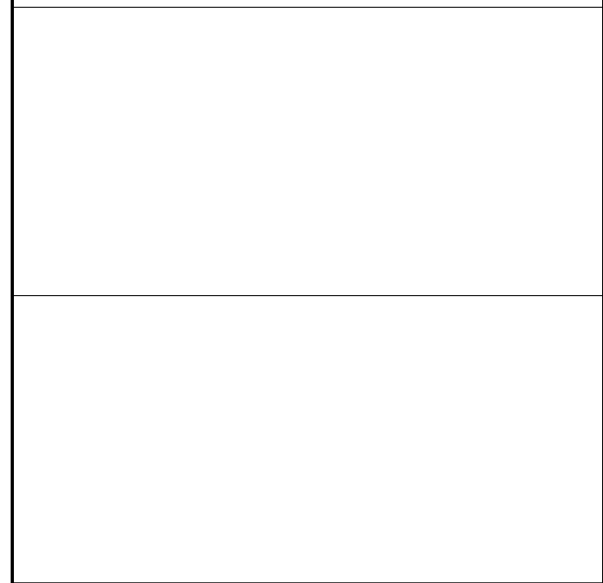
###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(제26조 관련)

#### 1. 공개공지 등 현황

(4쪽 중 제1쪽)

위 치	( 구 등 변지)				
건물명			사용승인일		
건축물 기본정보	대지면적	m <sup>2</sup>	연 면 적	m <sup>2</sup>	
	건 배 율	%	용 적 륜	%	
	층 수	지상	층	주 용 도	
		지하	층		
	건축기준 완화내용	용적률 완화			
		높이 완화			
		기 타			
		기 타			
	건축주		연 락 처		
	설 계 자		연 락 처		
시 공 자		연 락 처			
면 적	m <sup>2</sup>	유 형 <sup>B)</sup>			
공개공지 기본정보	조성시설	휴게시설	벤 치 <input type="checkbox"/> 설치( 개)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설치	태 이 불 <input type="checkbox"/> 설치( 개)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설치	
		파고라	<input type="checkbox"/> 설치( 개)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설치	운 동 기 구 <input type="checkbox"/> 설치( 개)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설치	
	기타시설	조 명	<input type="checkbox"/> 설치( 개)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설치	가 타 사 람 <input type="checkbox"/> 설치( ( 개))	
		안내 표지판	설치방법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착형(건물벽, 바닥, 시설물에 부착) <input type="checkbox"/> 스탠드형(독립된 표지판)		
	감 리 자 <sup>A)</sup>	(인)(사무소명 : )			

공개공지 배치도<sup>A)</sup>



5) 공개공지 사진은 전체 조성현황 및 이용실태가 보일 수 있는 거리에서 최소 2개 지점 이상 촬영하도록 하고, 위반내용 등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을 Close-up하여 촬영하도록 한다.

(4쪽 중 제3쪽)

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bottom: 10px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개공지 시설사진<sup>6)</sup></th> </tr> <tr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안내표지판(필수)</th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벤   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height: 40px;"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테   이   블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파   고   라</th> </tr> <tr> <td style="height: 40px;"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경시설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조   명</th> </tr> <tr> <td style="height: 40px;"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운동기구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타시설</th> </tr> <tr> <td style="height: 40px;"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6) 공개공지 시설사진 중 안내표지판은 의무사항이며, 이외 조성시설물 사진은 조성내역에 따라 촬영하도록 한다. (4쪽 중 제4쪽)</p> <p><b>2. 공개공지 등 사용현황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5%;">연번</th> <th colspan="2" style="width: 15%;">사용자</th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15%;">사용목적</th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15%;">사용기간</th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10%;">비고</th> </tr> <tr> <th style="width: 5%;">성명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주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공개공지 시설사진 <sup>6)</sup>		안내표지판(필수)	벤   치			테   이   블	파   고   라			수경시설	조   명			운동기구	기타시설			연번	사용자		사용목적	사용기간	비고	성명	주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개공지 시설사진 <sup>6)</su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안내표지판(필수)	벤   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테   이   블	파   고   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경시설	조   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운동기구	기타시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번	사용자		사용목적	사용기간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성명	주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